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의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한 전역증 등의 재발급 신청 근거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고, 현역병 모집 선발 시에 중·고교 출결 평가 폐지 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서류 및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서식을 병역의무자 입장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병역증 또는 전역증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발급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행낭을 통해 전송한다. 이를 전송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방문 또는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제2호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전형 및 선발에 필요한 경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을 “전형 및 선발에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

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제9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관	처리기간 즉시 * 병역면제자 등의 병적증명서는 1일
신청서 종류		[] 병적증명서([] 한글, [] 영문) / [] 병역증 재발급 / [] 전역증 재발급([] 한글, [] 영문)			
공 통	발급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성명(영문) * 영문 병적증명서 및 영문 전역증 신청자만 기재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군별	군번	계급	전역(소집해제)일자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		용도	[] 공직자 등 신고 [] 입영(소집) 사실 확인 [] 경력 확인 [] 취업 [] 시험 응시 [] 보훈대상자 등록(안장심사용 포함) [] 기타 ()		
		[] 군(대체) 복무를 마친 지 않은 사람	■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 [] 기재 [] 미기재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비 공개 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 군(대체) 복무를 마친 사람	① 군 별 [] 기재 [] 미기재 ② 군 번 [] 기재 [] 미기재 ③ 계 급 [] 기재 [] 미기재 ④ 복무분야 [] 기재 [] 미기재 * 해당항목은 전투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양경찰대원, 교정 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한 경우에 한함 ⑤ 복무계급 [] 기재 [] 미기재		

		* 해당항목은 전투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양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한 경우에 한함 ⑥ 병과(특기) []기재 []미기재 ⑦ 전역구분(사유) []기재 []미기재 ⑧ 역 중 []기재 []미기재 * '공직자 등 신고용', '보훈대상자 등록용'은 별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입영(임관, 소집)일자 및 전역(소집해제)일자는 기본항목으로 기재하여 발급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	* 상단의 신청 내용 이외에 군경력 등 요구사항 기재 발급매수 []매

위와 같이 병역증서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앞쪽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1. 승선근무예비역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무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안정적인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에 위법, 부당한 대우나 고충사항 등이 있는 경우, 권익보호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지원 병역일터 'www.work.mma.go.kr -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참고) 3. 해운·수산업체의 장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앞쪽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안정적인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에 위법, 부당한 대우나 고충사항 등이 있는 경우, 권익보호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지원 병역일터 'www.work.mma.go.kr -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참고) 3.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132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역병 지원서

(3쪽 중 제1쪽)

1. 기본정보

※ 작성 시 유의사항

- 지금부터 귀하께서 작성하시는 내용은 관련기관 등에 조화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만약 허위로 작성할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입영하더라도 선발 당시의 특기와 다른 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영통지서는 E-mail과 모바일앱으로 발송되므로 전자우편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나라사랑메일)		병적지칭	
전자우편(상용)		응시지역 병무청	
주소			

◎ 여비받을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	

◎ 학력사항

구분	학교명	학제	전공학과	학년	졸업구분
중학교졸업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업전문/ 인력개발원	교육기관명			수료기간	

◎ 자격/면허사항(무도단증 포함)

명칭	취득일자	명칭	취득일자

2. 모집분야

지망	군별	모집구분	모집회차	입영년월
1지망				
2지망				
3지망				

3. 추가항목

● 신체조건 사항

신장(cm)		체중(kg)		나안시력 (안경, 렌즈 벗고)	
교정시력		색각장애		문신여부	문신유무: 위치: 크기: cm ※ 손바닥 면적이 10cm ²

* 선택사항

※ 아래 신체 사항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디스크관절이상 ☐ 운동장애 ☐ 수지결손 ☐ 수지강직 ☐ 안경(렌즈)착용 ☐ 청력장애
☐ 언어장애 ☐ 폐쇄공포증 ☐ 수전증

● 직업경력

직업(근무분야)	종사기간	직장명칭	직장소재지 주소	직장전화번호

4. 특기선택

지망차수	1지망	2지망	3지망(지원가능 특기중 하나가 무작위로 지정됩니다)
특기			예 ○ 아니오 ○

5. 가산항목

군사특기명	가산항목	군사특기명	가산항목

* 사회봉사활동(헌혈 포함/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질병치유 자진입대, 국외이주자 자진입대,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자녀 등

6. 중복지원

지망구분	군	군사특기	입영부대
1차			
2차			
3차			

「병역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역병 모집에 응시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하는 사람 만 제출합니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1부(모집분야 관련 전공학과만 해당합니다) 2.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그 밖에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면허증(약사, 방사선사, 안경사, 운전, 영양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사항	확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항목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인적사항'란은 합격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2. '병적지청'란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 지방병무(지)청을 적고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주소지 지방병무(지)청을 적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 지방병무(지)청을 적습니다.
3. '응시지역 병무청'란은 병적지와 관계 없이 신체검사 등을 받을 지방병무(지)청을 적습니다.
4. '여비받을 계좌'란은 여비가 지급될 금융계좌번호[병무청장이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되는 신용카드(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해당 계좌로 병역판정(신체)검사 및 입영여비 등이 지급됩니다.
5. '학력사항'란은 출신학교명 등을 정확하게 적고 '졸업구분'란은 재학, 휴학, 졸업, 퇴학, 수료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전문학교 및 인력개발원 등을 수료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명과 수료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6. '자격/면허사항'란은 소지하고 있는 자격명과 취득시기를 적습니다.
7. '신체조건사항'란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기록이 아닌 현재 귀하의 상태를 적고,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8. '직업경력'란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근무부서에서 재직한 기간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9. '가산항목'란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경력 등에 대하여 현역병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이 경우 '질병치유 자진입대'는 당초 전시군로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후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초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에 한해 인정)

() 현역병 지원서 접수증

위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창구로 직접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접수화면에 전산입력하고 수험표(접수증)를 발급합니다.

신 원 진 술 서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학교)	직장명(학교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학교)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자격 • 면허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 • 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 .		
	[] 없음			. . . ~ . . .		
병 역 (군 경력)	군 별	군번 (순번)	기간	최종 계급 (직급)	최종 근무지	미필사유
			~			
			~			
학 력 (고교이상)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父				
	母				
	子女				
	子女				
	子女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직 책		연 락 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국군방첩시령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직접 수집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롱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학교)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학교)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국적(배우자, 자녀 포함), 자격·면허, 재산(배우자, 미혼 자녀 포함), 병역(군번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및 동반가족 등 포함), 가족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및 북한거주 가족 등 포함), 친교인물(성명, 직업 등 포함)
	관계기관 제공	개인 병적·경력·교육·평가 사항 등(각 군)
수집·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기간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선발·임용(채용)·비밀취급 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직접 수집	정당 · 사회단체 경력, 개인 신용정보 등
	관계기관 제공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주변 의견 조회(각 군)
	수집 · 이용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 · 이용기간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선발·임용(채용)·비밀취급 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기간	신원조사 종료 후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신원조사 의뢰 기관
항목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기간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파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ש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원분야	[]의무 []법무 []군종 []수의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학교명 또는 수련(연수)기관명		
	입학 연월일	졸업·수료예정 연월일	
[] 동의 [] 부동의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합니다.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3.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 1부(자격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	------	------	---

병역 의무자	성명(한글)		성명(영문)		생년월일
	외국성명(외국여권상)		* 복수국적자만 기재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내			
		국외			

국내 거주 중인 사람 허가 신청	☐ 허가 신청	여행기간	. . . ~ . . . (. 년 . 월 . 일간)				
		여행목적	여행국명				
	☐ 허가 기간 변경 신청	변경을 희망하는 허가내역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여행 목적	여행국명			
		변경 신청 * 출국 전에만 신청가능	기간변경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 국외체류 중(일시귀국 포함인 사람 기간연장 허가 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이전 허가사항	여행 목적	여행국명		
		병무청 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 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허가 취소	취소 사유: ☐ 일정/목적 변경 ☐ 조기 귀국 ☐ 기타()
-------	--

국내/외 가족사항 (친지 등 포함)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역법」 제70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 및 제14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 법인의 추천서	없음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없음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음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없음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없음
국외이주의 경우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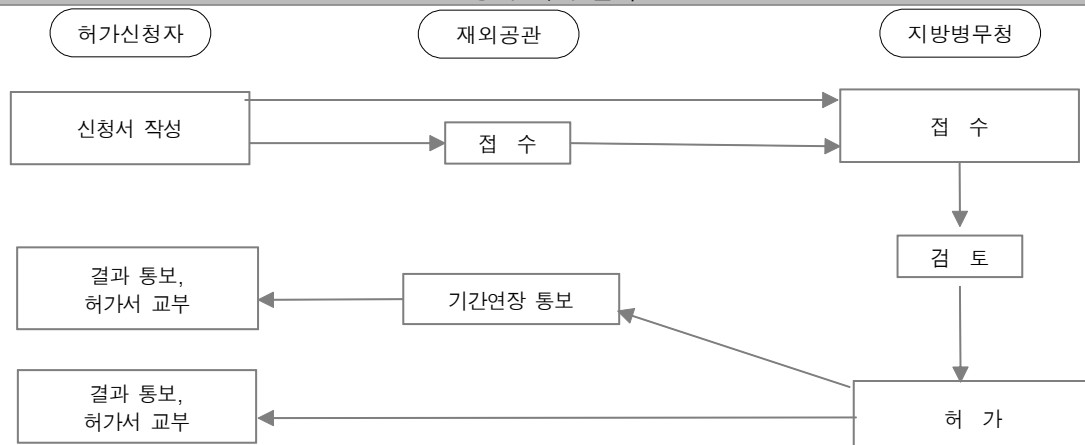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

신청서 처리 절차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 Please check the notice and documents attached and fill out the form. (Front)

Receipt No.	Date of receipt	Processing period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2 days Permission for extension of period of overseas travel: 10 days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Extension of Period): 1 day
-------------	-----------------	-------------------	--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Name		Date of birth
	Foreign Name(Passport Name) *For Multiple Nationality Only		
	Telephone No.		Mobile phone No.
	E-mail		
	Address	Address in Korea Overseas address	

Application for permission by person residing in Korea	[] Application for permission	Period of travel	20 ~ 20 (days)		
		Purpose of travel	Name of travel country		
	[] Application for change of permission period	Permission details to be changed	Permission Period	20 ~ 20 (days)	
			Purpose of travel	Name of travel country	
		Application for change	Period of change requested		
			*Submit before departure only 20 ~ 20 (days)		

☐ Application for Extension permission for person residing abroad (including temporary return)	Confirmation by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abroad: (seal)			
	Previous Permission Details	Purpose of travel	Name of travel country	
		Permission period	20 ~ 20 (days)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extension	Purpose of stay	Name of country of stay	
		Period of extension requested	20 ~ 20 (days)	

Revocation of permission	Revocation reasons: ☐ change of schedule/purpose ☐ earlier return ☐ others()
--------------------------	---

Family details in Korea/abroad (including relatives, etc.)	Name	Relationship	Address	Telephone No.	E-mail

I apply for []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the period) or []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the period), pursuant to Articles 70 (1) and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Articles 145 through 147 and 14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Date: (mm-dd-yyy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lationship with the applicant:

To: Director of ○○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Head of Military Manpower Branch Office)

There are no additional fees for submitting the application.

Documents attached		
Category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Confirmation matters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cluding off-season training) and overseas performance	A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head of the pertinent school,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 or a professional athletic affiliate corporation.	None
Internship, field study, and cultural exchange	A plan or permit by the relevant institution	None
Overseas dispatch and business trip	A certificate of overseas business trip or a written order of overseas dispatch by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or the military service-designated entity	None
Crew of intercontinental ships and intercontinental airliners	Employment contracts	None
Overseas employment	A certificate of employment verified by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abroad	None
Overseas medical treatment	A medical certificate for military service	None
Studying abroad	A certificate of admission or enrollment	None
Emigration	A confirmation of family residence Documents confirming emigration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Certificate of reporting of emigration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concerning family relations
Case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Documents confirming the purpose of departure	None

Written Consent for the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agree that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his case checks out the above confirmation matters of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There are no fees. If you do not agree or the documents cannot be verified through the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direc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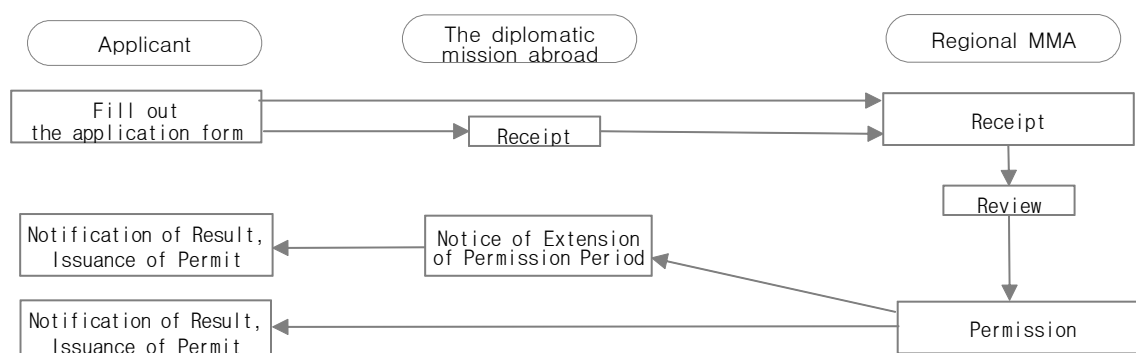
Applicant

(signature or seal)

Notice

- ☐ Measures for violators of the duty to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 If a person who shall obtai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the period) pursuant to Article 70 of the Military Service Act violates this, he or she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sanction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6 (5) and 94 of that Act and Article 145 (4)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 Criminal punishment
 - Any person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or stays in a foreign country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ith a view to evad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or being eligible f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five years.
 - Any person who has left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70 (1) or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o stays in a foreign country, or who has not returned home within a permitted period without good cau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 Details of sanctions
 - Restrictions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and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and on any permission, authorization, etc. for various government-authorized, permitted, or licensed business (up to the age of 40)
 - Restrictions on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matters regarding non-performance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etc. on the website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1-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pplication processing Procedure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⑦ (생략)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② (생략)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생략) 2. 모바일 전역증: <u>별지 제7호서식</u>의 기재사항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① (생략)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u>제1항</u>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 5.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	<u>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u>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u>별지 제7호서식</u>(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u>별지 제7호의2서식</u>을 말한다)-----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형 및 선발에 필요한 경우 제1항</u>----- ----- ----- --- 2. ~ 5. (현행과 같음) ③ -----
---	---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④ ~ ⑥ (생략)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형 및
선발에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② · ③ (생 략)

제78조(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
항에 따라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
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 · 법무 · 군
종 · 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생 략)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본증명서

4. (생 략)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장교의 지원서)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본증
명서

4. (현행과 같음)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u>한 다.</u>	
-------------	--